

평창군세감면안 검토보고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1. 9. 4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1. 10.12
- 다. 상정일자 : 2001. 10.13 제8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특위

2. 제안이유

- 2001.7.22 · 7.23일 우리군 일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주택침수등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.
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.

3. 주요글자

- 피해내용 : 주택침수 24동, 이재민 28명, 농경지 유실 · 메몰 60ha
(피해농가 334가구)
- 지방세 감면내용 : 총442명 7,299천원
 - 주민세 : 224명 1,105천원
 - 종합토지세 : 218명 6,194천원

4. 검토결과

- 지난 7.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국지적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.

수해 군민에게 경제적 ·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방세인 주민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으로 주민세는 구분없이 전액 감면하여 주고 종합토지세는 종토세 10만원 이하인 농가는 전액을

종합토지세가 10만원 초과하는 농가는 10만원 정액을 감면하여 주려는

것입니다.

- 이것은 지방세법 제9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거
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